[붙임1]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사유
제38조(이사의 보수)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.	**제38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**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	이사의 퇴직금 지급 조문 신설
제52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②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의해 지급한다.	**제52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**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	감사의 퇴직금 지급 조문 변경
제54조(재무제표의 작성비치)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④ 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⑤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	**제54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등의 작성비치)**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.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② 감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이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. ④ 회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<삭제>	관계법령 조문해석에 따른 조문정비
-	**부 칙**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	